

COMPLAINT FOR ABSOLUTE DIVORCE INSTRUCTIONS FOR COMPLETING FORM CC-DR-020

이혼(Absolute Divorce) 소장
CC-DR020 양식 작성 지침

Prior to completing Form CC-DR-020 Complaint for Absolute Divorce review th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in addition to this Instruction form.

CC-DR-020 양식 이혼(Absolute Divorce)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이 지침 양식 **이외에도 일반 지침 (CC-DRIN 양식)**을 검토해주시시오.

These Instructions are meant to assist you and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본 지침은 단지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WHO SHOULD USE THIS FORM?

본 양식을 누가 사용해야 하나요?

You should use Form CC-DR-020 Complaint for Absolute Divorce if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다음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경우, CC-DR-020 최종 이혼 판결을 위한 소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At least* one (1) of the grounds for divorce described in paragraph 15 has been met;
- 최소15항에 기재된 이혼의 근거 중 한 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 You are asking the court to grant you a complete dissolution (ending) of your marriage; AND 귀하가 법원에 결혼의 완전한 관계 해지 (종료)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You are not hiring a lawyer (also called an attorney or counsel) to file the case for you. 귀하가 사건 접수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O I NEED A LAWYER?

나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The answer is probably YES if:

다음의 경우 그 대답은 '네'일 수 있습니다.

- The case is contested or your spouse has a lawyer. 사건에 다툼이 있거나 배우자가 변호사인 경우.
- You do not have an address for or cannot locate your spouse in order to serve him or her with your papers. 배우자에게,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없거나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You or your spouse has a house, a pension/retirement account, or a large amount of property or income. Even if you are mutually consenting to divorce, it is advisable to speak with a lawyer before signing settlement agreements or filing papers with the court.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집, 연금/퇴직금 계좌 또는 상당량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라도, 합의서 또는 법원 문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There is a dispute on who should have custody of the children. 자녀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 The court may need information that you cannot get. 귀하가 구하지 못하는 정보를 법원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경우.
- You want an annulment instead of an absolute divorce. 이혼 판결 대신에 혼인 무효를 원하는 경우.
- You want a divorce after a long-term marriage (approximately 10 or more years) and/or you want alimony. 오랫동안(약 10년 이상) 결혼을 한 후 이혼을 원하거나 위자료를 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You may speak with or hire a lawyer at any time during the course of your case.

사건 진행 시 언제든지 귀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TEN (10) STEPS IN ORDER TO COMPLETE THE CASE YOURSELF:

사건을 완료하려면 10개의 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 STEP 1 - COMPLETE FORM CC-DR-020 COMPLAINT FOR ABSOLUTE DIVORCE:

□ 1 단계 - CC-DR-020 최종 이혼 판결을 위한 소장 작성:

Case caption: Fill in complete names, addresses and telephone numbers for yourself (as plaintiff) and your spouse (as defendant).

However, if you are requesting that your address or that of the child(ren) remain confidential because of concerns for safety or domestic violence issues, do not include your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rather contact the clerk's office regarding your contact information. The clerk will assign a **case number** once your case is filed. Fill in your name on the first line of the Complaint. You will need to provide an address where the opposing party (other side) will be able to serve you with their papers.

사건 제목: 귀하(원고로서) 와 귀하의 배우자(피고로서)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하지만, 안전상 또는 가정 폭력의 이유로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법원서기 사무실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에 관해 연락을 하십시오. 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서기가 **사건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소장 첫번째 라인에 귀하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귀하는 상대방사자(상대 당사자)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Paragraph 1: Fill in the month, day and year that you and your spouse became married; fill in the city or county and state where the marriage took place, and check the box indicating whether it was a civil (court or justice of the peace) or religious (church or by clergy) ceremony.

1항: 배우자와 결혼을 한 월, 일 및 연도를 기재하십시오. 결혼을 한 시/카운티 및 주를 기재하고 민사법원(법원 또는 치안판사)이었던지 또는 종교(교회 또는 성직자) 예식이었던지를 나타내는 박스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Paragraph 2: Check the statement that applies about Maryland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is divorce, and fill in month and year that person's residence in Maryland began.

2항: 본 이혼의 목적에 대해 메릴랜드 주민에 대해 해당하는 진술문을 확인하고 메릴랜드 거주 시작되었던 월 및 연도를 기재하십시오.

Paragraph 3: Check all boxes that apply about where the grounds for divorce (paragraph 15) occurred.

3항: 이혼 사유(Paragraph 15)에 관해 해당하는 박스에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 .

Paragraph 4: Check one box that applies to your case about children. If you and your spouse have no children together you may skip to paragraph 12. If you and your spouse have any children, fill in their complete names and dates of birth in the lines provided.

4항: 자녀에 관해 귀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한 개의 박스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나온 자녀가 없다면 **Paragraph 12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와 배우자가 자녀가 함께 있었다면 제공된 선 위에 자녀 이름과 출생 날짜를 기재해주십시오.

Paragraph 5: If you and your spouse have children and there are other cases in any court (in Maryland or any other state) involving any one or all of the children, including any domestic violence case, provide complete case information in the lines provided, including the name of the court where the case was filed, case number, kind of case, year filed and the result or current status of the case.

5항: 귀하와 배우자가 자녀가 있고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자녀 관련 다른 법원과의 사건이 있다면 (메릴랜드 또는 다른 주), 사건이 접수된 법원명, 사건 번호, 사건 종류, 사건의 결과 또는 현재 상태에 대해 제공된 기재란에 사건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Paragraph 6: List all cases you have been a party or witness to, or involved in, concerning custody, guardianship or visitation (child access) of one or all of the children including the state where the case was filed, name of the court, case number, and date that any child custody or guardianship determination was made, **and attach a copy of the most recent court order for all of the cases that you list.**

6항: 자녀의 양육권, 후견인 또는 방문권 (자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자였던 또는 증인이었던 모든 사건을 사건이 접수된 주, 법원명, 사건 번호, 자녀 양육권 또는 후견인 결정이 판결난 날짜를 열거한 후, **기재한 모든 사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정 명령 사본을 첨부해주십시오 .**

Paragraph 7: Fill in complete names and addresses of any people who are NOT a party (plaintiff or defendant) in this case, but who have physical custody of, or who may claim rights of legal (decision-making) or physical custody, or visitation (child access) with, the child(ren).

7항: 본 사건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아니면서 신체적 양육권을 가지거나 법적 (의사 결정) 또는 신체적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자녀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주십시오.

Paragraph 8: Fill in complete address where the child(ren) presently live(s), and complete name of the person(s) they live with at this time.

8항: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완전한 주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해주십시오 .

Paragraph 9: Fill in the appropriate box about whether the child(ren) has/have lived in Maryland for six (6) months. Fill in dates, places (towns or states) where the child(ren) has/have lived, and complete names and current addresses for each person the child(ren) lived with during the last five (5) years.

9항: 자녀가 메릴랜드에서 6개월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에 있어 해당 박스를 표시해주십시오 . 날짜, 자녀가 거주한 장소 (타운 또는 주), 지난 5년간 자녀가 함께 거주를 한 각 사람의 이름과 현재 주소를 기재해주십시오.

Paragraph 10: Check the appropriate statements about the legal (decision-making) and physical custody of, and visitation (child access or parenting time) with the child(ren) that you are asking the court to consider.

10항: 법원이 고려를 하기를 요청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의사 결정) 및 신체적 양육권 및 방문권 (자녀에 대한 접근 또는 부모 시간)에 관해 해당 진술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Paragraph 11: Check the statement that applies about child support and/or health insurance; if there is already a separate child support case in the Office of Child Support or the court, fill in case number information for that case. **If child support is an issue in your case you MUST file a financial statement with your Complaint.** If child support is the only financial issue in your case, complete and file **Form CC-DR-030 Financial Statement (Child Support Guidelines).** If you also have property, alimony or other financial issues complete and file **Form CC-DR-031 General Financial Statement** instead.

11항: 양육비 및 또는 건강 보험에 관해 해당하는 진술문에 표시를 하십시오. 양육비 기관 사무실 또는 법원에 이미 별도의 다른 양육비 건이 있는 경우, 그 건에 대한 사건 번호 정보를 기재해주십시오. **양육비가 귀하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반드시 귀하의 소장에 재정 진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가 귀하의 사건에서 유일한 재정적 문제가 되는 경우, **CC-DR-030 양식 재정 진술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접수해주십시오. 자산, 위자료 또는 다른 재정적 이슈가 있는 경우, **CC-DR-031 양식 일반 재정 진술서**를 작성해주십시오.

Paragraph 12: Check the appropriate statement about alimony and fill in a brief explanation. If you are requesting alimony you must file a **Form CC-DR-031 General Financial Form** with your Complaint.

12항: 위자료에 대해 해당 진술문을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주십시오. 위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 **소장과 함께 CC-DR-031 일반 재정 양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NOTE: If you do not request alimony, or waive a claim to alimony in this divorce case, a future claim for alimony may not be made after an absolute divorce is granted.

비고: 위자료를 요청하시거나 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 최종 판결문이 발행된 후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Paragraph 13: Check the appropriate statement about marital property and debt that applies in your case.

13항: 귀하의 사건에 해당하는 결혼 재산 및 채무에 관련하여 해당 진술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NOTE: If you and your spouse do not have an agreement about division of property but do not request property division at the time of a final divorce hearing, the court may be prohibited from addressing property issues after the divorce is granted.

주: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최종 이혼 청문 시에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혼 판결 후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Paragraph 14: If you would like to take back a name you used before this marriage, fill in the complete name you want to take back. You may request to be restored to a former name as long as it is not for any fraudulent reason, or to avoid or hide from creditors.

14항: 결혼 전 이름을 다시 사용하길 원하시면 다시 사용을 원하는 이름을 기재해주시고, 사기성 이유 또는 채무자를 피하거나 숨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이전 이름으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TE: If you do not request to be restored to your former name at the time of divorce, you may do so by a separate request no long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the clerk enters a decree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주: 이혼 시 이전 이름 회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최종 이혼 결정(또는 판결)을 법원서기가 입력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별도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Paragraph 15: Grounds for Divorce - read each ground and check any that apply to your case (you may check more than one). **The ground you choose must have already accrued before filing this Complaint.** For example, to check Twelve 12-Month Separation you must have been separated for 12 months *before* filing for divorce using this ground.

15항: 이혼 사유 - 각 사유를 읽은 후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시고 (한 개 이상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본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별거를 표시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본 이혼 접수 전에 12개월 동안 별거를 해왔어야 합니다.

NOTE: About the Mutual Consent ground: If you are filing for divorce using this ground you must have a written agreement with your spouse that resolves all property and alimony issues, you **MUST** attach a copy of your agreement signed by both parties to the Complaint, and the child support worksheet if you have children. If you have children, you must also include child custody, access, and support of minor or dependent child(ren) in your signed agreement and attach a completed Child Support Worksheet. **IF YOU DO NOT PROVIDE A SIGNED AGREEMENT A DIVORCE CANNOT BE GRANTED.**

주: 상호 합의 사유: 그러한 근거로써 이혼을 접수하는 경우, 배우자와 모든 재산 및 위자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서면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동의서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료 워크시트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서명한 동의서 사본에 양육권, 접근 및 미성년자 또는 독립된 자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완성된 양육료 워크시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명한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혼이 승인될 수 없습니다.

Final Paragraph "FOR THESE REASONS": Check off ALL requests you are asking the court to grant based on the statements made in your numbered paragraphs. These are your "requests for relief."

마지막 항 "이러한 이유로": 귀하가 사용한 단락에 기재된 진술에 근거하여 법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이것이 귀하의 "구제 요청"입니다.

Affidavit: Complete the Affidavit. This is your sworn statement that all the statements and information contained in your paper are true and correct.

선서진술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해주시고, 이것은 문서의 모든 진술 및 정보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는 진술서입니다.

STEP 2 - COMPLETE ALL OTHER REQUIRED FORMS:

2 단계 - 다른 모든 요구되는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Civil-Domestic Case Information Report (Form CC/DCM-001).** This form assists the court in understanding the issues in your case and the anticipated time for case scheduling.
- **민사-가사 사건 정보 보고서 (양식 CC/DCM-001).** 이 양식은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 일정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Form CC-DR-030 Financial Statement (Child Support Guidelines).** This is a "short form financial statement" that **MUST** be completed and filed with your Complaint if you are asking to establish child support.
- **CC-DR-030 재정 진술서 양식 (양육비 가이드라인).** 이것은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짧은 재정 진술서 양식"입니다.
- **Form CC-DR-031 Financial Statement (General).** This is a "long form financial statement" that **MUST** be completed and filed with your Complaint if you are requesting alimony or a monetary award in property division. If you have property, alimony **AND** child support claims you may file this form (you do not need to also file the short form above).
- **CC-DR-031 재정 진술서 양식 (일반).** 이것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소장과 함께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는 "장문의 재정 진술서 양식"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여 (위의 짧은 양식은 접수하실 필요 없음)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Form CC-DR-033 Joint Statement of Parties Concerning Marital and Non-Marital Property.**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filed no less than 10 days before your final hearing date. (See below Step 8 Pre-Hearing Matters)
- **CC-DR-033 결혼 재산 및 비결혼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동 진술서 양식** 본 양식은 최종 청문 날짜 10일 전에 반드시 작성 및 접수되어야 합니다. (아래 8 단계 사전 청문 사항 참조)
- **Your signed and dated settlement agreement.** If you filed for divorce based on the ground of **Mutual Consent**, you **MUST** attach a copy of your agreement to the Complaint.
- **귀하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합의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을 접수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반드시 소장에 귀하의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Division of Vital Statistics, Report of Absolute Divorce or Annulment of Marriage.** This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form tracks divorce statistics in Maryland. You must complete this form and submit it to the court at the end of your hearing. The clerk's office or the courtroom clerk can give you a blank form. **Your divorce decree will not be mailed to you unless this form is filed.**
- **인구 통계 통계 부서, 최종 이혼 또는 혼인 무효 보고** 이 메릴랜드 보건 부서 양식은 메릴랜드의 이혼 통계를 추적합니다. 귀하는 청문 종료 시 법원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서기 사무실 또는 법정 서기가 공란의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혼 판결문은 이 양식이 제출되지 않으면 귀하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 **STEP 3 - FILING FEE:**

□ **3 단계- 접수비:**

Filing fees are required for most case forms and must be paid to the clerk of the court at the time you file papers. Contact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amount and form of payment accepted (some clerk’s offices do not accept personal checks). If you meet income requirements to have prepayment of the filing and other court costs waived, complete a **Form CC-DR-089 Request for Waiver of Prepaid Costs, with the required documentation.**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How Much Will This Cost?”*).

접수비는 대부분의 사건 양식에 적용되며 문서 접수시 법정 사무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접수 비용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부 사무실은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선납한 접수 비용 및 기타 법원 비용의 취소 관련 수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 **CC-DR-089 선납 비용 취소 요청 양식** 을 다른 요구되는 문서와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하십시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비용이 얼마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STEP 4 - FILING YOUR FORMS:**

□ **4 단계- 양식 접수:**

Give your completed and signed forms, fee payment or Request for Waiver of Prepaid Costs, to the civil clerk of the appropriate circuit court. **Make at least two (2) copies of all forms before filing**, one (1) for service of process to the opposing party, and one (1) for your records. The clerk will issue a case number at the time of filing; write-in the case number on each of the copies you made.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ere Should I File My Case?”*, or *Speak to a lawyer if you are not sure where you should file your case.*)

작성되고 서명된 양식, 접수 비용 또는 선납 비용 취소 요청서를 해당 순회법원의 민사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접수하기 전에 모든 양식에 대해 최소 두(2)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하나는 다른 쪽(상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다른 하나(1)는 보관하십시오. 사무관이 접수 시 사건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귀하의 각 사본에 사건 번호를 적으십시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내 사건을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나?”를 참조하거나 접수 장소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귀하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STEP 5 - SERVICE OF PROCESS:**

□ **5 단계 - 소장의 송달:**

After your case has been filed and accepted the clerk of the court will issue a Writ of Summons; you must arrange for service of process of the Writ of Summons AND a complete copy of all forms and documents filed in the case. Proof of service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clerk before the case can continue. If you are unable to complete service, or you do not know where to find the defendant for service speak to a lawyer about alternate forms of service.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at is Service of Process?”*)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서기를 소환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귀하는 소환장 및 본 사건에 접수된 모든 양식과 문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 증명은 반드시 사건을 계속하기 전에 법원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려는 데 피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형태의 송달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소장의 송달이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STEP 6 - REQUEST AN ORDER OF DEFAULT IF NO ANSWER IS FILED:**

□ **6 단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결석재판 신청:**

After proper service of process is made the defendant has a set period of time to file an Answer; this period of time depends on where service was made.

적절한 송달을 하면, 피고는 어느 정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 기간은 송달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If the opposing party resides or was served:

상대 당사자가 다음에 거주하거나 송달받은 경우:

- o within the state of Maryland, he or she has **30 days** to file an Answer.
- o 메릴랜드 주 내에 있는 경우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o in another state, he or she has **60 days** to file an Answer.
- o 다른 주에 있는 경우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in another country, he or she has **90 days** to file an Answer.
- o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답변서를 **90 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F NO ANSWER has been filed by the deadline after service, complete and file a **Request for Order of Default, (Form CC-DR-054).** The judge will grant the Order of Default if he or she is satisfied that the opposing party is not presently in the military and proof of service has been filed with the court.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at Happens After Service is Made?”*)

송달 마감일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결석 명령 요청서, (CC-DR-054 양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판사는 상대 당사자가 군대에 있지 않고 송달증명서가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 결석 재판을 인정합니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소장의 송달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STEP 7 - REQUEST FOR HEARING OR PROCEEDING:**

□ **7 단계 - 청문 또는 재판 요청:**

Most courts will automatically begin scheduling a case conference or hearing once an Answer or Order of Default is docketed by the clerk. However, if you don’t receive notice from the court within a reasonable time contact the clerk of the court to determine if you should file a **Request for Hearing (Form CC-DR-059).**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at Happens Next?”*).

대부분의 법원은 답변서 또는 결석 재판이 법원서기에 의해 기록된 후, 자동으로 사건 변론 또는 청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서기에게 연락하여 **청문 신청서(양식 CC-DR-059)**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STEP 8 - PRE-HEARING MATTERS:**

□ **8 단계- 청문 전 사항:**

Once your case is scheduled for a hearing or trial date, prepare for the following issues if they are part of your case:

청문 또는 재판 기일이 잡히면, 다음의 귀하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 **Marital and Non-Marital Property:** If you are requesting the court to divide property and debt, or to grant a monetary award for value of property, both you and your spouse must complete the **Joint Statement of Parties Concerning Marital and Non-Marital Property (Form CC-DR-033)**. This form provides required information to the court about what each party believes is marital or non-marital property. This form must be filed with the clerk's office **no later than 10 days prior to your final trial date**. Even if your spouse does not cooperate in completing a joint form, you must file your completed form.
- **결혼 재산 또는 비결혼 재산:** 귀하가 법원에 재산 및 채무 분할을 요청하거나 재산 가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요청하는 경우, 귀하 및 배우자는 반드시 **CC-DR-033 결혼 및 비결혼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동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각 당사자가 결혼 및 비결혼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 양식은 반드시 귀하의 **최종 재판 기일 10일 전에** 법원서기 사무실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본 공동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귀하는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Child Support:** If you have minor children, complete the **Child Support Guidelines Worksheet (Worksheet A-Primary Physical Custody, Form CC-DR-034, OR Worksheet B-Shared Physical Custody, Form CC-DR-035)**. A Child Support Calculator is available through the People's Law Library of Maryland website (www.peoples-law.org) (See Child Support Instructions, Form CC-DRIN-010)
- **양육비:**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가이드라인 워크시트 (워크시트 A-일차적 신체 양육권, CC-DR-034 양식 또는 워크시트 B-공동 신체 양육권, 양식 CC-DR-035)** 을 작성하십시오. 양육비 계산은 메릴랜드 웹사이트(www.peoples-law.org)의 주민 법률 도서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침, CC-DRIN-010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STEP 9 - HEARING/TRIAL:**

□ **9 단계 - 청문/재판:**

At your hearing or trial, you have an opportunity to testify. Witnesses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about your case may also testify. You may also present any evidence that may be accepted by the court under the **Rules of Evidence**. The other side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his/her side of the case and offer testimony, witnesses, and evidence. Both sides will hav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ask questions) the other side's witnesses about their testimony. Arrive to the courthouse before your scheduled hearing time and be prepared with the original and additional copies of your evidence for the court and the opposing party. **The court is not required to make copies for you.**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at Happens in Court?"*)

귀하의 청문 또는 재판 시, 귀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증인도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법칙** 하에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사건을 제시하고 증언, 증인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두 상대쪽의 증인에 대해 교차 신문(질문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해진 청문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하여 법원 및 다른 쪽(상대 당사자)을 위한 귀하의 증거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귀하를 위해 사본을 만들지 않습니다.** (양식 CC-DRIN 일반 지침, "법원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를 참조하십시오.)

NOTE: As a general rule, children under 18 should not be witnesses in a divorce or custody trial. However, if you have been ordered by the court to bring your child(ren) to court, you must do so. If you believe your child(ren)'s testimony is absolutely necessary you should speak with lawyer about how best to present this to the court. If a parent must be in court, and needs child care, some courthouses provide this service.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specific courthouse.

주: 일반적인 규칙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은 이혼 또는 양육권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녀를 법정으로 동반하라는 명령을 할 경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법정에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여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부모가 법원에 있어야 함으로써 탁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부 법정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NOTE: The courts are no longer prohibited from entering a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without corroborating testimony of a witness. Although you are no longer required to provide a corroborating witness, you **must still prove your eligibility and ground for divorce to the court**. A corroborating witness may still be useful in your case, particularly if there are contested (disputed) issues in your case.

주: 법원이 증인의 증언 확증없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확증을 하는 증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귀하의 이혼 자격 및 근거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반박(다툼)이 있는 경우, 증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STEP 10 -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 **10 단계 - 최종 이혼 판결:**

You will not be officially absolutely divorced on the day of the final hearing. Although the magistrate or judge may recommend or grant your absolute divorce, you are not legally divorced until a final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is signed by a judge. You will receive the certified Judgment of Absolute Divorce from the Clerk of the Court (unless outstanding court costs have not been paid), depending on the following:

청문 최종일에 공식적인 이혼이 발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안판사 또는 판사가 귀하의 최종 이혼 판결을 권장 또는 승인하여도, 판사가 최종 이혼 판결문에 서명을 할 때까지 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에 따라 법원서기로부터 최종 이혼 판결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 (법원 비용을 미지불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Magistrate's hearing** - if the hearing was before a magistrate, the Magistrate's Report and Recommendations will be reviewed by a judge. A judgment will be signed unless any party files written exceptions disputing the magistrate's recommendations. A party may file exceptions with the clerk within 10 days of the magistrate's announcement of the recommendations on the record or if the recommendations are not announced on the record,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service of the Magistrate's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he party. Upon being served with exceptions filed by a party, any opposing party may file exceptions within the original time period to file exceptions, or within 10 days of service of the original exceptions, whichever is later. Exception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set forth the asserted error with particularity. Any matter not specifically set forth in the exceptions is waived unless the court finds that justice requires otherwise. If no exceptions are filed the clerk's office will mail the Judgment for Absolute Divorce usually within two (2) to three (3) weeks of the hearing date.
- **치안판사의 청문**- 치안판사와 청문이 진행될 경우, 치안판사의 보고서 및 권고사항이 판사에 의해 검토됩니다. 판사는 치안판사의 권고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판결문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기록에서 치안 판사의 권고 사항 통지가 있는 후 10일 이내에 또는 권고 사항이 기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치안 판사의 보고서 및 당사자에 대한 권고 사항의 송달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예외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접수한 예외사항의 송달에 따라 상대 당사자는 예외 사항 접수에 대한 원래의 기간 내에 또는 원래의 예외 사항의 송달 후 10일 이내 중 더 늦은 기간 내에 예외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 오류에 대해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문제는 법원이 따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 사항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법원서기는 보통, 이혼 판결문을 청문으로부터 2주에서 3주 내에 우편 송달할 것입니다.
- **Judge's hearing** - if the hearing was before a judge you will receive your Judgment once the judge's chambers has completed it and forwarded it to the clerk for docketing and mailing. If a lawyer was involved in the case, the judge may instruct him or her to prepare and send a Judgment to the court for the judge's review and signature.
- **판사의 청문**- 판사와 청문이 열린 경우, 판사실이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이 문서 기록 및 우편 발송을 위해 사무관에게 전달되면 귀하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판사는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 검토와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e General Instructions, Form CC-DRIN, "What Happens After Court?"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what you may expect after your hearing is completed.)

(추가 정보는 양식 CC-DRIN 일반 지침, "법원 후 무슨 일이 생깁니까?"를 참고하여 어떤 일을 예상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